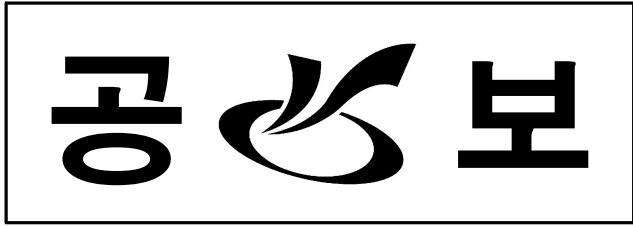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 660호

2008년 10월 13일 월요일

차 례

훈 령

- 인천광역시서구훈령 제262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심의회 운영규정 2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820호 마전지구 교통영향평가 재협의(초안) 주민설명회 2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828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부과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2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830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837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2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847호 인천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 예고 2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848호 인천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입법 예고 2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850호 인천광역시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853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부과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2

훈 령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심의회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8년 10월 13일

인천광역시서구훈령 제262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구에 거주하는 지역실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미진학 청소년, 청년실업자 및 저소득 구민의 취업능력 개발을 통하여 자활기반을 확충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하여 건전한 지역사회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담당부서국장이 되고 간사는 고용취업관련 담당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경제과장
2. 지방노동관서, 직업훈련기관, 교육기관, 경제단체, 민·관 취업알선기관 및 단체, 지역고용서비스협회, 지역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관계관으로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소속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한 자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심의한다.

1. 지역실업자 직업훈련기관 지정 추천·심의
2.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실시에 관한 중요 사항
3. 취업 및 고용증대를 위한 민·관 인프라 구축
4. 취업 및 고용증대를 위한 자체 프로그램 개발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또는 심의회 구성기관이 협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기타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심의회 회의에 3회 이상 연속 불참하였을 경우
3. 기타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해 심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찬·반위원의 수가 같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회의결과 등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실적보고) 위원장은 당해 심의회에서 의결된 중요사항에 관하여 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협조의 요청) 심의회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수당) 심의회 위원에 회의에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820호

**마전지구 교통영향평가 재협의를(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8조 규정에 의거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일원
- 다.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 라. 사업 면적 : 609,404㎡

2. 공람기간 및 장소

- 가. 공람기간 : 2008. 10. 2 ~ 2008. 10. 21
- 나.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지역개발부(032-565-0545)
 인천광역시서구청 교통행정과(032-560-4855)

3. 주민설명회 개최

- 가. 일 시 : 2008. 10. 10(금) 14:00
- 나. 장 소 : 검단복지회관 대강당

4. 주민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 2008. 10. 21일(화)까지

나. 제출처 : 공람장소와 동일

다.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소정의 서식에 의견 기재 제출

라. 제출내용 :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교통불편사항,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와 감소방안 등의 의견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서구청 교통행정과(032-560-4855)와 종합건설본부 지역개발부(032-565-05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10월 2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82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성 명 : 안재홍 외 66인

주소거소 : 별첨

공고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부과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08. 10. 02 ~ 2008. 10. 16(15일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차량에 대하여 부과예고서를 우편으로 귀하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법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관련 증빙자료가 있는 대상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2008년 10월 16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청 교통민원과(☎032-560-4874, FAX032-560-486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 내 의견제출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정된 과태료가 부과되며,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10월 2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자동차의무보험 부과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승달 내역서

연번	접수번호	차량번호	납부자명	주소	회차	비고
1	00021198	01나7724	인재홍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204번지 4호 18통 1번	08-3회차	부과예고
2	00021247	05소8146	서원자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60번지 1호 17통 1번 상아아파트 A동 103호	08-3회차	부과예고
3	00021261	07나2819	조재욱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523번지 8호 5통 5번 해선빌딩 301호	08-3회차	부과예고
4	00021263	07로8653	곽호술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10번지 20호 11통 3번 라인맨션 1동 B01호	08-3회차	부과예고
5	00021269	07부7051	김지현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69번지 19호 23통 1번 한미음아트빌 5동 402호	08-3회차	부과예고
6	00021297	09도9091	황경일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65번지 5통 3번 대진아파트 302동 506호	08-3회차	부과예고
7	00021325	12라5881	황길오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111번지 86호 4통 3번 문성하이츠타운 12동 201호	08-3회차	부과예고
8	00021331	13무2983	김영수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18번지 37호 42통 4번 산하빌라 2동 302호	08-3회차	부과예고
9	00021337	15도3674	김성길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8통 3번 신안실크밸리아파트 508동 905호	08-3회차	부과예고
10	00021345	16다7439	김기성(채권면제)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08번지 3호 21/2 대명파크빌라 17동 B02호	08-3회차	부과예고
11	00021373	19라4799	오미경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85번지 14호 33통 6번 한송빌라 가동 402호	08-3회차	부과예고
12	00021403	26다2719	박지철 외1인(박인철)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10번지 9호 11/3 라인맨션 2동 102호	08-3회차	부과예고
13	00021417	27무3662	박영길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41번지 15호 30통 4번 하나아파트 101동 1211호	08-3회차	부과예고
14	00021425	27라9161	김광열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45번지 118호 19통 1번 대인빌라 니동 101호	08-3회차	부과예고
15	00021433	27다6731	이혜진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82번지 40호 28통 4번 102호	08-3회차	부과예고
16	00021435	27무2230	최민자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번지 115호 32통 6번	08-3회차	부과예고
17	00021437	27무2849	오세경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6통 3번 동문굿모닝힐아파트 603동 603호	08-3회차	부과예고
18	00021439	27무3702	최제순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499번지 22호 29통 3번 신세희빌라 A동 401호	08-3회차	부과예고
19	00021441	27바1623	김동영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08번지 14통 2번 주공아파트 125동 406호	08-3회차	부과예고
20	00021447	28루2881	황미연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51번지 7호 18통 5번 경인빌라 가동 B01호	08-3회차	부과예고
21	00021491	32주6590	김재만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46번지 40호 29통 3번 영동빌라 8동 402호	08-3회차	부과예고
22	00021497	34나9827	관영희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885번지 1호 18통 2번 신대진탑스빌아파트 110동 601호	08-3회차	부과예고

23	00021513	38고6130	고영섭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334번지 4호 9동 1반 중앙빌라 A동 401호	08-3호차	부과예고
24	00021521	38고6553	이동석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63번지 2동 2반 리츠빌라 101동 402호	08-3호차	부과예고
25	00021585	48라2913	이상열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80번지 1호 29동 4반 정은빌라 202호	08-3호차	부과예고
26	00021601	52도4820	신혜영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69번지 28호 18동 5반 서림빌라 8동 B01호	08-3호차	부과예고
27	00021638	57오3567	정한주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01번지 1호 28동 4반 헤드림 아파트 104동 210호	08-3호차	부과예고
28	00021651	58부5753	김언우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20번지 22호 20동 1반 성산아파트 301호	08-3호차	부과예고
29	00021671	68로6115	정도임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477번지 11호 12동 1반 청솔빌라 202호	08-3호차	부과예고
30	00021679	73구2517	정진욱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46번지 30호 26동 1반 승림빌라 202동 401호	08-3호차	부과예고
31	00021687	73두3506	백호삼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90번지 11동 1반 동진아파트 가동 403호	08-3호차	부과예고
32	00021695	73우1434	송태원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37번지 1호 42동 1반 아파트빌 411호	08-3호차	부과예고
33	00021699	73우5483	유지석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55번지 22호 19동 5반 에그리빌라 C동 403호	08-3호차	부과예고
34	00021705	73우8410	이석규	인천광역시 서구 불노동 불로지구 39블럭 불로로호어울림아파트 101-401	08-3호차	부과예고
35	00021713	73우9262	조영도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34번지 1호 48동 5반 신명스카이뷰드림아파트 105동 104호	08-3호차	부과예고
36	00021715	75조6469	심택성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300번지 8호 2동 5반 일신하이츠빌라 A동 102호	08-3호차	부과예고
37	00021717	76노3599	박동석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07번지 5호 31동 3반 에덴빌라 가동 102호	08-3호차	부과예고
38	00021727	84디3268	박영수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97번지 11호 5동 2반 201호	08-3호차	부과예고
39	00021735	86구7893	손주형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7동 3반 신안실크밸리아파트 503동 1301호	08-3호차	부과예고
40	00021739	86노7304	최승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산 17번지 9호 8동 4반 현광아파트 나동 112호	08-3호차	부과예고
41	00021747	86누7626	김영철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134번지 7호 12동 2반 휴미리더타운 202호	08-3호차	부과예고
42	00021773	86보6724	손팔주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47번지 10호 27동 2반	08-3호차	부과예고
43	00021775	86부2417	신국희외(최희옥)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22번지32호46/3 한곡빌라 104동 301호	08-3호차	부과예고
44	00021789	86수2029	유홍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173번지 1호 9동 2반	08-3호차	부과예고
45	00021797	86주4099	박기종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72번지 13호 3동 3반 나우빌라지 4동 501호	08-3호차	부과예고
46	00021801	86주8282	최동남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109번지 57호 6동 5반 디세다주택 나동 401호	08-3호차	부과예고

47	00021815	87가7854	김미숙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80번지 17호 7동 1반	08-3호차	부과예고
48	00021845	92가3564	김순자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48번지 27호 12동 2반 201호	08-3호차	부과예고
49	00021861	인천30도4891	임순자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52번지 20호 16동 3반 101호	08-3호차	부과예고
50	00021865	인천30리5989	배미진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25번지 8호 19동 2반 청솔빌라 3동 801호	08-3호차	부과예고
51	00021867	인천30리7421	장운석 T.425-7171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27번지 31호 48/3	08-3호차	부과예고
52	00021893	인천31무6713	유승현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30번지 27호 19동 5반	08-3호차	부과예고
53	00021905	인천33도4139	박현희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04번지 5호 21동 1반 한우리빌라 401호	08-3호차	부과예고
54	00021913	인천34나9934	이구영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70번지 12호 26동 1반	08-3호차	부과예고
55	00021927	인천34마5188	손주형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7동 3반 신안스그밸리아파트 503동 1301호	08-3호차	부과예고
56	00021931	인천35가6439	김기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66번지 4동 3반 인항아파트 3동 305호	08-3호차	부과예고
57	00021935	인천35고6634	백승향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42번지 2호 24동 1반 청아파트 A동 302호	08-3호차	부과예고
58	00021949	인천35노3376	임선희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4동 2반 주공아파트 125동 202호	08-3호차	부과예고
59	00021965	인천35리9092	임혜정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89번지 2호 13동 3반 중앙탑스빌 C동 503호	08-3호차	부과예고
60	00021986	인천4리4514	오승열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28번지 11호 18동 6반 흥인빌라 가동 202호	08-3호차	부과예고
61	00021992	인천70가9282	배동수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326번지 2호 41동 3반 103호	08-3호차	부과예고
62	00022006	인천7노6083	남경영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번지 120호 32동 2반 한성아파트 가동 111호	08-3호차	부과예고
63	00022010	인천80가4780	박상돈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39번지 47호 23동 2반 평화빌라 가동 301호	08-3호차	부과예고
64	00022037	인천83나4968	윤선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486번지 9호 15동 3반	08-3호차	부과예고
65	00022045	인천83다3870	(주)성빈퍼니처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산 118번지	08-3호차	부과예고
66	00022062	인천83바8896	김태웅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22번지 4동 3반 태화아파트 D동 303호	08-3호차	부과예고
67	00022083	인천서지7373	조규화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79번지 15호 51동 2반 효마을타운 107동 101호	08-3호차	부과예고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830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규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8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2. 개정사유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5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

3.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5조 제4호의 관련조문 개정
 - ▷ 「관용차량관리규정」 → 「공용차량관리규정」
 - ▷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
→ 「인천광역시서구관용차량관리규칙 제6조」

4.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10.27 (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404-701,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심곡동 244번지) Fax:(032)560-4099】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사항 등

○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총무과 총무팀 ☎ 032)560-4094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 정비안 요약서

자 치 법 규 명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사 유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5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
주 요 내 용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5조 제4호의 관련조문 개정 ▷ 「관용차량관리규정」 → 「공용차량관리규정」 ▷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 → 「인천광역시서구관용차량관리규칙 제6조」
개 정 안	“ 별 지 참 조 ”
신·구조문대비표	“ 별 지 참 조 ”
관계법령 발체	“ 별 지 참 조 ”
관련사업 계획	“ 해 당 없 음 ”
예산수반사항	“ 해 당 없 음 ”
기타 참고사항	“ 해 당 없 음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인천광역시 서구관용차량관리규칙」 제6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1]”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p> <p>1. ~ 3. (생략)</p> <p>4. <u>제18조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u></p> <p>5. ~ 8. (생략)</p>	<p>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인천광역시서구관용차량관리규칙」 제6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1]”로 본다.</u></p> <p>5. ~ 8. (현행과 같음)</p>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8-83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귀하께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고지서 및 재산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이사감)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008.11.11일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재산압류 및 강제징수 등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10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1. 제 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80조
- 3. 처분원인 : 건축법위반
- 4. 처분대상

성 명	주 소	위반위치	체납액(원)	압류할 재산내역		
				재 산 구 분	지 번 (차명)	지 목/면적 (등록번호)
강갑순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38 삼익세라믹(A) 101/1604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2-70	2,882,340 6,165,000	차량	마이티II 저상 무 소 렉스턴	인천81다18** 인천70라30** 인천35머99**

- 5. 공고기간 : 2008.10.07. ~ 2008.10.20.
- 6. 게시장소 : 시보,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기타사항 :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며, 납부의사가 있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32)560-4712)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 840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3-5호선)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명:소로3류5호선, 사업명:가좌3동 현대아파트 부근 도로정비공사】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을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73) 및 건설과(560-452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21-3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도시계획도로(소로3류5호선)
【명칭】 가좌3동 현대아파트 부근 도로정비공사
3. 사업의 규모 : L = 133m, B = 6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8. 10월 ~ 2009. 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붙임과 같음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붙임과 같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과 같음
9.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토 지 조 서

번 호	토 지 소 재			현실적 이용상황	면 적 (㎡)			소 유 자		비 고
	동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잔여	성 명	주 소	
①	가좌동	121-30	도	도로	12	12	0	윤재중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산37-4 현대③ 307동906호	
②	가좌동	122-3	도	도로	36	36	0	인천광역시 서구		
③	가좌동	129-5	전	도로	133	133	0	박미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55 파크타운 129동 1303호	
④	가좌동	122-18	대	도로	518	518	0	인천광역시 서구		
⑤	가좌동	122-17	대	인도	9	9	0	인천광역시		
⑥	가좌동	산51-10	임	도로	109	109	0	조인근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45-47번지	압류: 서인천세무서 압류: 북인천세무서 가압류: 농업협동 조합중앙회(인천가 좌지점) 가압류: 농업협동 조합중앙회(인천지 역본부) 압류: 인천광역시 서구 압류: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					817	817	0			

지 장 물 조 서

연번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총면적 (㎡)	편입면적 (㎡)	실제 이용 현황	물건 소유자		비 고
							주 소	성 명	
①	가좌동 산50-10	건물 (상가)	샌드위치판넬	7.0	2.6	상가	가좌동 129-3	김일권	도 시 계 획 시 설 (도로 : 소 3 - 5 호 선) 에 편 입 가 좌 동 산 50 - 10 번 지 (소유 자 : 조 인 근) 토 지 에 무 단 점 유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847호

「인천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취지

-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을 근거로 건립중인 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2. 주요내용

- 서구국민체육센터의 설치 목적과 명칭에 관한 사항
- 서구국민체육센터 이용에 관한 사항
- 서구국민체육센터 개방 및 대관에 관한 사항
- 서구국민체육센터 사용료 감면 및 반환,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
- 사용자 손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시설관리 및 강사배치에 관한 사항
-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 조문수 21조, 부칙, 별표 2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문화체육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560-4131)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에 따라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서구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체육센터는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495번지에 둔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센터 시설”이란 체육시설과 그에 부수된 시설 및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물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체육센터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체육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등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자를 말한다.

제4조(사용허가) 체육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3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다만, 교육수강 및 수영장, 헬스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과 동시에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사용허가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등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7조(시설개방 및 대관)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체육센터를 개방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센터 자체의 교육일정 및 공연·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1. 기본시설 : 에어로빅실, 세미나실, 체육관
2. 부속시설 : 행사에 필요한 부속기기와 냉·난방 시설

제8조(개방 및 대관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육센터 시설의 개방 및 대관 제한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유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구민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1. 시설의 개·보수 등 위험이 예상될 때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입장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술에 취한 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자

제10조(사용시간) 체육센터 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시간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체육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 2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1. 교육수강료, 수영장, 헬스장의 사용료는 신청과 동시에 징수한다.

2. 사용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일로부터 사용일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당일에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행사 및 경기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3.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비영리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영장, 헬스장의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는 100분의 30,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4.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④ 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2. 구의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5일전까지 취하원을 제출한 경우
4. 사용전날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총 납부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반환
5.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납부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반환
 ② 납부된 수강료의 경우 강의개시 전일까지 수강의 취소를 요청할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고, 강의개시 후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월의 수강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강료를 반환한다.

제14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발생할 때
3. 체육센터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처분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5조(사용자 손해배상 책임) ① 체육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센터 시설물 및 부대 시설물이 파괴 또는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며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양도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허가 받은 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8조(강사 배치) ① 구청장은 체육센터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강사를 위촉 또는 초청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설 관리) 구청장은 체육센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의 규모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구민의 사용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체육단체, 공기업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체육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1]

서구국민체육센터 이용시간 (제10조 관련)

구 분	이 용 시 간
조 기	06:00 ~ 09:00
오 전	09:00 ~ 13:00
오 후	13:00 ~ 18:00
야 간	18:00 ~ 22:00

[별 표 2]

서구국민체육센터 사용료(제11조 관련)

1. 수영장입장료

(단위:원)

구 분		입장료	비고
어린이(초등학생이하)		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라 함은 20인 이상이 동일 소속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자를 말함. ○ 월회원이라 함은 1개월 단위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 강습회원이라 함은 입회하여 주3회 이상 운영하는 1개월 코스를 수강하는 자를 말함.
청소년(중·고생)		2,200	
성 인		3,000	
단 체	어린이	1,400	
	청소년	1,700	
	성 인	2,800	
월 회 원	어린이	28,000	
	청소년	33,000	
	성 인	42,000	
강습회원	어린이	38,000	
	청소년	44,000	
	성 인	52,000	

2. 체력단련실

(단위:원)

구분		사용료	비고
청소년		1,000	○ 월회원이라 함은 1개월 단위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 샤워장 사용료 포함.
성 인		2,000	
월회원	청소년	25,000	
	성 인	35,000	

3. 체육관 사용료

(단위:원)

구분		입장료	비고
어린이(초등생이하)		700	○ 단체라 함은 50인 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 대관은 1회 2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1회 사용료에 100분의 50을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청소년(중·고생)		1,200	
성 인		1,500	
단 체	어린이	500	
	청소년	600	
	성 인	1,200	
대 관		80,000	

4. 교육 수강료

가. 문화프로그램

(단위:원)

구분	수강료	비고
문화프로그램	20,000	○ 재료비는 별도 본인 부담 ○ 1주 2회 이상(1회1시간) ○ 4주를 1개월로 봄 ○ 1개월, 1명 기준

나. 체육프로그램

(단위:원)

구분	사용료	비고	
탁구,우슈 검도,태권도 농구,기타	어린이	30,000	○ 주5회(월~금) 운영의 1개월 강습 (1일1회 1시간 기준, 단 배드민턴은 1일 1회 2시간 기준) ○ 샤워장 사용료 포함
	청소년	35,000	
	성인	40,000	
배드민턴	33,000		
에어로빅	33,000		

○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물함사용료 월5,000원 범위내, 열쇠분실교체료 7,000원, 회원카드재발급수수료 1,000원의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다.

○ 사용료의 할증 및 할인

- ▶ 토·일·공휴일은 사용료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할증할 수 있다.
- ▶ 문화 및 체육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특성상 사용료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조정가능
- ▶ 2종목 이상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금액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 ▶ 3개월이상 장기 이용자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848호

「인천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8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입법 예고

1. 제정취지

- 서구 국민체육센터를 설치 운영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

2. 주요내용

- 서구국민체육센터의 설치 목적
- 서구국민체육센터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서구국민체육센터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 서구국민체육센터 회원모집, 강좌변경, 폐강, 연기신청, 사용료반환에 관한 사항
- 서구 국민체육센터 휴관일
- 서구 국민체육센터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
- 서구 국민체육센터 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
- 서구 국민체육센터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 조문수 11조, 부칙,별지3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문화체육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560-4131)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서구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계획서 작성) 체육센터의 장 또는 조례 제20조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매년 서구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체육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나 허가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이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자가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부대시설 사용 확인서를 제출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회원모집 등) ① 정기과목을 수강하는 자에게는 회원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회원의 모집은 강좌별 강사의 수 및 시설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모집하여야 한다.

③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경우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하였을 경우
2. 체육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이용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3. 그 밖에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강좌의 변경 및 폐강) ① 회원은 참여하고 있는 강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강좌의 변경신청 시 사용료의 추가납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강좌의 특성상 시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미리 알리고 변경할 수 있다.

④ 강좌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폐강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6조(연기신청) 회원의 사정으로 강좌의 참여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강좌 시작 7일전까지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 ① 제5조제4항 및 조례 제13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조례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반환한다.

제8조(휴관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을 한다.

1.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명절(설, 추석)연휴
2. 정부 및 구청 방침에 의한 휴일
3. 기타 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제9조(운영시간) 체육센터 운영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기타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점검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은 월 2회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일은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로 한다.

제11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서구국민체육센터 시설(변경)사용 허가서

사 용 자	단 체 (성 명)								
사용목적	목 적								
사용기간	대관기간	년	월	일	요일	시	분	부터	(시간)
		년	월	일	요일	시	분	부터	(일간)
사 용 료	일금	원정(금)							

「인천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사용허가)에
따라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 구 국 민 체 육 센 터 장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 850 호

인천광역시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규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9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06.12.28일 교통안전법 및 '07.12.31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면서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각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행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서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위원회의 기능은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및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심의(안 제2조)
- 나. 위원회의 구성은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위원회의 임기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라.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원장이 위촉하여 둘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마. 위원회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교통안전업무 부서장과 교통안전 업무담당자 각각 간사와 서기가 됨(안 제7조)
- 바.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에 따라 설치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서 설치되는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로 봄(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10.29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참조:교통행정과장, 우편번호 404-701, 주소: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심곡동 244번지) Fax:(032)560-4099】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사항 등
- 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032-560-48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관리국장
2. 기획홍보실장
3. 건설과장
4. 교통담당과장
5. 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6.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7. 교통사업자 및 그 조합,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행정담당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85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성 명 : 정제만 외 72인

주소거소 : 별첨

공고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부과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08. 10. 09 ~ 2008. 10. 23(15일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차량에 대하여 부과예고서를 우편으로 귀하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법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관련 증빙자료가 있는 대상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2008년 10월 23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청 교통민원과(☎032-560-4874, FAX032-560-486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 내 의견제출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정된 과태료가 부과되며,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10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자동차의무보험 부과에 교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서

연번	접수번호	차량번호	납부지명	주소	반송사유	회차	비고
1	00022129	06다2838	정제만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284번지 338호 10동 3반 개나리아파트 3동 101호	폐문부재	09-1회차	부과예고
2	00022137	06다49714	이순애	인천광역시 서구 신흥동 288번지 19호 2동 2반	폐문부재	09-1회차	부과예고
3	00022188	06부8043	이재선	인천광역시 서구 용길동 55동 5반 경단애-관한세상아파트 118동 201호	폐문부재	09-1회차	부과예고
4	00022209	17우9722	(주)비스코솔루션	인천광역시 서구 괴좌동 5883번지 10호	수취인불명	09-1회차	부과예고
5	00022222	19라4963	이강인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63번지 1호 7동 1반 대진아파트 201동 601호	폐문부재	09-1회차	부과예고
6	00022245	20구8626	강현기	인천광역시 서구 용길동 55동 1반 경단애-관한세상아파트 110동 903호	폐문부재	09-1회차	부과예고
7	00022275	25도1486	장성진	인천광역시 서구 괴좌동 263번지 28호 38동 1반 대원빌라 1동 402호	폐문부재	09-1회차	부과예고
8	00022281	27누1333	김수지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2동 1반 당하3차풍림아파트 201동 803호	폐문부재	09-1회차	부과예고
9	00022285	27라4919	김연우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20번지 22호 20동 1반 성산아파트 301호	폐문부재	09-1회차	부과예고
10	00022286	27도4552	이후남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488번지 6호 23동 2반	폐문부재	09-1회차	부과예고
11	00022293	27바1915	임병인	인천광역시 서구 신흥동 212번지 63호 33동 2반 장인빌라 106동 402호	폐문부재	09-1회차	부과예고
12	00022298	28라2009	주현욱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639번지 5동 1반 영남탐스빌아파트 112동 401호	폐문부재	09-1회차	부과예고
13	00022311	28마2709	임현재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68번지 9호 17동 2반 은영빌라 108동 B02호	폐문부재	09-1회차	부과예고
14	00022315	28마3508	추성호	인천광역시 서구 연회동 732번지 13호 54동 2반 대신아파트빌라 8동 801호	폐문부재	09-1회차	부과예고
15	00022322	28바6423	정옥선	인천광역시 서구 신흥동 280번지 7호 7동 4반	폐문부재	09-1회차	부과예고
16	00022333	30서6363	박성한	인천광역시 서구 신흥동 168번지 3호 16동 1반 정동중보빌라 301호	폐문부재	09-1회차	부과예고
17	00022342	32주6071	유재수 외유혜진(채관연제)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294번지 58호 3/2 대광아파트맨션 1동 203호	폐문부재	09-1회차	부과예고
18	00022394	38고6762	김기영	인천광역시 서구 신흥동 200번지 6호 24동 4반 원흥아파트 1동 910호	폐문부재	09-1회차	부과예고
19	00022404	38고6791	이상민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10번지 33호 38동 2반 애성빌라트 A동 401호	폐문부재	09-1회차	부과예고
20	00022426	39조4367	송민호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587번지 6동 5반 동아아파트 105동 401호	폐문부재	09-1회차	부과예고
21	00022436	42우4905	이미나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68번지 1호 33동 3반 한국빌라 401동 B02호	폐문부재	09-1회차	부과예고
22	00022442	45도9897	김영민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43동 2반 풍림아파트 102동 905호	폐문부재	09-1회차	부과예고
23	00022458	48마1687	김동준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13동 4반 엘지원당지아파트 704동 1504호	폐문부재	09-1회차	부과예고

24	00022482	52주6883	고은미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60번지 13호 13동 1번 금잔디빌라 5동 101호	이시불명	09-1호차	부과예고
25	00022505	58부5808	안경만외(인(고광범))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14번지 1호 2116 석남수정 1동 506호	폐문부재	09-1호차	부과예고
26	00022531	63부4582	김규식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40번지 36호 55동 2번 세진탑스빌 3동 801호	폐문부재	09-1호차	부과예고
27	00022545	64우4259	정의택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494번지 5호 25동 6번 경성빌라 기동 402호	폐문부재	09-1호차	부과예고
28	00022548	68다15253	남정순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66번지 15호 14동 1번 원흥빌라 가동 302호	폐문부재	09-1호차	부과예고
29	00022551	68다15750	이정남	인천광역시 서구 삼곡동 242번지 7호 7동 4번 제스티브빌 511호	폐문부재	09-1호차	부과예고
30	00022555	68다15955	이우기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27번지 1호 6동 1번 정도빌라 3동 201호	이시불명	09-1호차	부과예고
31	00022575	79두2908	윤선해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90번지 2호 10동 2번 한신아트빌 303호	폐문부재	09-1호차	부과예고
32	00022579	79부7488	김남열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587번지 6동 4번 동아아파트 104동 1504호	폐문부재	09-1호차	부과예고
33	00022589	79우8407	강영선	인천광역시 서구 삼곡동 327번지 23호 50동 2번 대송파인빌 210동 402호	폐문부재	09-1호차	부과예고
34	00022602	86가2467	차민석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61번지 33호 27동 2번 유성주택 4동 201호	폐문부재	09-1호차	부과예고
35	00022618	86리16323	장병영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61번지 29호 23동 2번	수취인불명	09-1호차	부과예고
36	00022646	86주9304	김원익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43번지 7호 20동 1번	폐문부재	09-1호차	부과예고
37	00022652	87가13608	최주영	인천광역시 서구 삼곡동 260번지 16호 6동 2번 5102호	폐문부재	09-1호차	부과예고
38	00022654	87가4512	오정식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300번지 7호 2동 5번 일신하이츠빌라 5동 101호	수취인불명	09-1호차	부과예고
39	00022676	91다16373	장윤식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06번지 16동 5번 쿠파모스아파트 5동 304호	폐문부재	09-1호차	부과예고
40	00022677	91다18777	조익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11번지 17호 37동 4번	폐문부재	09-1호차	부과예고
41	00022680	91라4075	배윤경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8호 12동 4번 동우아파트 107동 414호	폐문부재	09-1호차	부과예고
42	00022684	91조9634	김정숙	인천광역시 서구 삼곡동 251번지 20호 18동 2번 서보주택 1동 101호	폐문부재	09-1호차	부과예고
43	00022703	인천14015719	이형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249번지 14호 202호	주소불명	09-1호차	부과예고
44	00022706	인천30고4696	이상재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133번지 4호 12동 1번 신세계빌라 나동 102호	폐문부재	09-1호차	부과예고
45	00022711	인천30구9982	미성일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87번지 89호 11동 3번	폐문부재	09-1호차	부과예고
46	00022721	인천30018345	김광일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684번지 24호 33동 3번 신영베스트빌 2동 302호	수취인불명	09-1호차	부과예고
47	00022722	인천30044394	고숙근 T.576-2833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52번지 19호 23동4번	폐문부재	09-1호차	부과예고
48	00022726	인천300818009	남정기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682번지 1호 44동 3번 중앙아파트 101동 806호	폐문부재	09-1호차	부과예고
49	00022760	인천32015710	백주이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64번지 3호 25동 2번 수플림아파트 406호	폐문부재	09-1호차	부과예고

50	00022763	인천02바1306	조청호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03번지 35동 3번 중앙아파트 본동 306호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03번지 35동 3번 중앙아파트 본동 306호	수취인불명	09-1호차	부과예고
51	00022796	인천04도9708	김진규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157번지 55호 20동 3번 한주타운 202호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157번지 55호 20동 3번 한주타운 202호	폐문부재	09-1호차	부과예고
52	00022799	인천04로6061	조현태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04번지 2호 21동 1번 강진빌라 201호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04번지 2호 21동 1번 강진빌라 201호	폐문부재	09-1호차	부과예고
53	00022804	인천05가2158	김춘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28번지 42호 29동 1번 201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28번지 42호 29동 1번 201호	폐문부재	09-1호차	부과예고
54	00022812	인천05노2897	김태혁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03번지 8동 4번 효경아파트 1108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03번지 8동 4번 효경아파트 1108호	폐문부재	09-1호차	부과예고
55	00022822	인천05다1212	김기영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48번지 19호 29동 2번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48번지 19호 29동 2번	폐문부재	09-1호차	부과예고
56	00022826	인천05다2036	(주)에이플러스에이전시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88번지 4호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88번지 4호	이시불명	09-1호차	부과예고
57	00022836	인천05다6630	염재경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492번지 2호 24동 2번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492번지 2호 24동 2번	폐문부재	09-1호차	부과예고
58	00022846	인천05라9682	함재기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85번지 10호 39동 7번 롯데아파트 102동 404호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85번지 10호 39동 7번 롯데아파트 102동 404호	폐문부재	09-1호차	부과예고
59	00022847	인천05라9811	백종태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69번지 3동 5번 한국아파트 301동 1610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69번지 3동 5번 한국아파트 301동 1610호	폐문부재	09-1호차	부과예고
60	00022850	인천05마7955	박승희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21번지 2호 18동 2번 동우아파트 나동 504호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21번지 2호 18동 2번 동우아파트 나동 504호	폐문부재	09-1호차	부과예고
61	00022878	인천70나2237	이상돈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02번지 5호 20동 1번 연희노빌 B동 203호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02번지 5호 20동 1번 연희노빌 B동 203호	폐문부재	09-1호차	부과예고
62	00022886	인천72가5466	이수희외(백주이)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64번지 3호 25/2 수플림아파트 406호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64번지 3호 25/2 수플림아파트 406호	폐문부재	09-1호차	부과예고
63	00022898	인천73노6991	정창환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22번지 2호 5동 1번 현대아파트 301동 1504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22번지 2호 5동 1번 현대아파트 301동 1504호	폐문부재	09-1호차	부과예고
64	00022909	인천80다7144	김종일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7동 6번 풍림아파트 824동 1103호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7동 6번 풍림아파트 824동 1103호	폐문부재	09-1호차	부과예고
65	00022923	인천81미6377	조현주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392번지 29호 3층 30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392번지 29호 3층 303호	폐문부재	09-1호차	부과예고
66	00022929	인천82라1644	김용동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04번지 12호 39동 1번 충인빌라 A동 801호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04번지 12호 39동 1번 충인빌라 A동 801호	이시불명	09-1호차	부과예고
67	00022949	인천83다6645	주현근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639번지 5동 1번 영남탑스빌아파트 112동 401호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639번지 5동 1번 영남탑스빌아파트 112동 401호	폐문부재	09-1호차	부과예고
68	00022950	인천83다6691	안왕철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0번지 83호 19동 1번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0번지 83호 19동 1번	폐문부재	09-1호차	부과예고
69	00022955	인천83라2480	임종순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63번지 22호 21동 1번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63번지 22호 21동 1번	폐문부재	09-1호차	부과예고
70	00022958	인천83바1206	노정현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07번지 15동 3번 상미아파트 나동 20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07번지 15동 3번 상미아파트 나동 202호	폐문부재	09-1호차	부과예고
71	00022968	인천83바8781	서수영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24번지 1호 19동 5번 대명주택 3동 203호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24번지 1호 19동 5번 대명주택 3동 203호	폐문부재	09-1호차	부과예고
72	00022992	인천서마1584	유호영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07번지 6호 21동 1번 연희오피스텔 A동 106호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07번지 6호 21동 1번 연희오피스텔 A동 106호	폐문부재	09-1호차	부과예고
73	00022473	51자6410	문지영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2동 8번 당하3차풍림아파트 209동 502호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2동 8번 당하3차풍림아파트 209동 502호	폐문부재	09-1호차	부과예고